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실행

## 1. 주요 개정의 내용

지난 2월 22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관련업계에는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등에 대한 유상판매제를 실시해 소비자 사이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장바구니 나

[표 1] 규제대상 확대 및 규제방식 개선

구분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점(일회용품, 접시, 용기, 수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상 : 33㎡ 이상 음식점</li> <li>□휴게음식점 등의 청량음료용 일회용컵 및 용기는 규제 제외 추가</li> <li>□규제 제외사항 :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조·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음식물 배달 및 자동판매기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음식점으로 확대</li> <li>□휴게음식점의 청량음료용 일회용컵 및 아이스크림용기도 규제대상</li> <li>□규제 제외사항(현행사항에 추가) : 일회용품을 90% 이상 회수해 재활용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일회용봉투, 쇼핑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상 매장 범위 : 백화점, 쇼핑센터 등 200㎡ 쇼핑백)</li> <li>□규제내용 :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자제</li> <li>* 별도 지정장소에서만 제공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상 매장 범위 : 백화점, 쇼핑센터 등 33㎡ 쇼핑백) 이상 매장</li> <li>□규제내용 : 165㎡ 이상 매장 - 일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억제(유상판매/환불제/쿠폰제)</li> <li>□33~165㎡ 매장 : 일회용봉투, 쇼핑백 사용 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락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li> <li>* 식품위생법상 업명칭 개정</li> <li>□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장기유통을 위한 밀봉포장 및 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든 제품은 제외</li> </ul>



뉘주기 행사 등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한편, 일회용품업계의 경우 현재까지는 10명 이상 음식점에 대한 규제의 폭이 10명 미만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청량음료 판매시 사용되는 일회용컵과 아이스크림 컵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회수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용이 규제된다.

또한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의 경우 이제까지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한 사용자제의 차원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94년부터 규제되어온 일회용품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주요대상물로 지목되면서 지자체 및 경찰력, 환경운동연합, YWCA 등 31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규제강화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민간유통업체에서는 비닐봉투 환불제, 쿠폰제 등을 시행한 성과를 근거로 정부에 제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인 5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위반될 경우 업주는 1차 이행명령(3개월 이내)을 받게되며 재차 위반하게 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환경부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업계에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표 2] 일회용품 일람표(규제·비규제 대상)

사업장	규제대상	비규제대상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컵(종이, 합성수지)</li> <li>□접시(종이, 합성수지, 알루미늄 박)</li> <li>□용기(종이, 합성수지, 알루미늄 박)</li> <li>□나무젓가락, 이쑤시개</li> <li>□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분이쑤시개</li> <li>* 나무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할 경우는 허용</li> <li>□빨대, 커피 등을 찌는 막대</li> <li>□햄버거 등을 싸는 종이</li> <li>□수저를 싸는 종이</li> <li>□휴지, 물수건</li> <li>□종이로 만든 식탁깔개</li> <li>□포장제공되는 설탕, 크림, 케첩</li> </ul>
□백화점 쇼핑센터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투(비닐, 종이)</li> <li>□쇼핑백(비닐, 종이로서 별도의 손잡이 있는 것)</li> <li>□합성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전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육류, 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은 합성수지 봉투</li> <li>□채소, 과일 등을 일정단위로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수지 봉투</li> </ul>
□합성수지제 도시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 물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용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li> </ul>
□목욕탕, 숙박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li> <li>* 유상판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봉</li> </ul>